

전자주민등록증 관련 시민단체 주장 검토

1. 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

- 전자주민증 반대단체는 수정안의 보완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 없음

○ '10.9.20 국회 제출된 주민등록법 개정안(정부안)에 대해 각종 토론회□간담회 등의 과정을 거쳐 법조문 수정이 진행되어 왔으며,

※ 인권위 토론 10.14, 공청회 10.25, 한나라당 토론회 12.16, 민주당 간담회 11. 2.15

○ 전자주민증 반대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중 법조문 수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쟁점의 대부분은 보완되었음

※ 주요쟁점 : 통합신분증화 우려, 전자적 수록정보의 유출 및 데이터베이스화 집적 우려, 전자주민증의 보안대책 등

【참고1】 전자주민증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 내용

2. 신분증 위·변조 건수와 비용

위·변조 사건이 499건에 그치고 있음에 비해 위·변조 방지를 위해 5,000억원을 투입할 타당성과 명분이 없음

○ 현 주민증은 경신('1999년)한지 10년이 지나 사진이 낡고 용모 변화가 심해 신분확인이 어려워 주민증의 교체가 필요

* 외국 신분증은 유효기간(5년 또는 10년) 경과 후 재발급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 주민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못해 평균 10년 주기로 경신

○ 따라서 교체시기에 맞추어,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증의 위□ 변조 문제 및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자주민증을 도입 하려는 것임

○ 현 플라스틱 증의 위□변조 적발건수(499건)는 타범죄 수사시 우연히 적발된 것으로, 최근의 신분증 범죄양상은 점차 전문 조직화, 일반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 소지

* 집 주인행세 전세금 사기단 적발('10.12월, '11.3월), 토지사기('11.2월), 위조증 판매 인터넷카페 적발('11.2월) 등 서민피해 속출

* MBC PD 수첩 : 신분증 위조에 의한 전세금 사기 집중 보도 ('11.3.8 방영)

○ 위□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주민증으로 경신할 경우 10년간 총 4,862억원 소요되어, 일반증으로 경신(3,284억원 추정)하는 것 보다 1,578억원(10년간)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,

- 증의 위□변조를 방지하고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점(연 1,250억원 손실 방지에 기여)에서 보다 효과적 대안임

* 주민등록증 관련 사회적 손실비용 추정치(연간 1,250억원) =
주민번호 유출(연간 1,000억원) + 증의 위□변조 범죄(연간 250억원)

【참고2】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례

3. 전자주민증의 위변조

- IC칩을 도입하더라도 위변조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100% 장담할 수는 없음

○ 국제공통평가기준(ISO/IEC CC인증)을 적용한 IC칩은 위변조□복제가 불가능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IT전문가의 공통된 견해이며,

* IC칩 복제 및 해킹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

○ IC칩을 탑재한 신분증은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을 만큼 안전한 수준임

- OECD 국가(34) 중 11개 국가에서 IC칩을 탑재한 전자신분증을 운영 중이며, 6개국에서 도입 추진 또는 논의 중에 있음
 - * OECD 11개국 : 독일□이탈리아□네덜란드□스웨덴□핀란드□벨기에□스페인 등
- IC칩을 적용한 전자여권은 86개국이 사용 중이며 그간 IC칩의 위변조 사례가 없었음
 - * 대한민국 전자여권 발급(08.8-) : 763만매 / 위변조 건수 : 610건('07)→ 122건(10)

4.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확인방법

- 현재 ARS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확인 시스템을 온라인화하고 결국 정보집적을 가져올 위험성을 높일 것임

- 전자주민증의 위□변조 확인은 증의 표면정보와 IC칩 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, 온라인 대조가 필요 없음
 - * 【전자주민증 위변조 확인】 주민증 제시 → 리더기와 IC칩간 보안연결 → IC칩 수록정보 열람 (표면정보와의 비교)
 - * 【현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】 IC칩이 없기 때문에 ARS 및 인터넷창구를 통해 주민증의 표면정보와 중앙DB의 저장정보를 비교→ 주민번호□발급 일자의 일치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서 사진 등 위변조 확인은 불가능함

5. 통합신분증화 우려

- 전자주민증이 일단 도입되면 다른 신분증을 전자화하여 연계하거나 통합될 의구심이 있음

- 운전면허, 건강보험 등 다른 신분증과의 정보 연계를 위해서는 IC칩에 연계키를 수록하여야 하며, 이는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으로서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

- 따라서, 주민등록법에 명확한 규정 없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과 다른 신분증을 연계□통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름

※ 2006년~2007년 차세대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에서는 연계키 수락을 통해 운전면허□건강보험 등 다른신분증과의 연계방안이 검토된 바 있음 (입법 사항 전제)

【참고3】 종전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추진과 비교

6. 휴대전화 개통시 전자주민증 사용 의무화

- 휴대전화 실명개통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도 휴대전화 개통할 때마다 이동통신사의 판독기에 전자주민증을 확인해야 함

-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해 판독기 설치가 의무화되거나 반드시 전자주민증으로만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특히 휴대전화 실명 개통이 의무화되는 것은 더더욱 아님
- 전자주민증은 그 표면에 성명, 사진, 생년월일 등 통상의 신분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, 유흥업소 등 생년월일 확인 등으로 충분한 곳에서는 판독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,
 - ※ 성명, 사진, 생년월일, 성별, 발행번호, 발행일, 유효기간, 주민등록기관
- 휴대전화 개통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면 전자주민증이 아닌 운전면허증 등으로도 신분확인을 할 수 있음
- 다만, 전자주민증 판독기는 사용처의 선택에 따라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재산상□신분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□금융□공공기관 등에서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
 - ※ 공공기관, 금융, 병원, 통신□부동산 등 총 20만 곳에서 수요발생 추정 (추정치에는 고객신분증 복사 관행이 있는 이동통신사도 포함하였음)

【참고4】 전자주민등록증 활용(예시)

참 고 1

전자주민증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 내용

그간 법안 설명, 공청회, 간담회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및 쟁점 대부분이 보완됨

□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명확화

- 대통령령으로 선택적 수록사항(혈액형 등)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개인정보로 확대되어 통합신분증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로 규정 필요(인권위 토론회 10.14, 공청회 10.25, 국감 10.22, 간담회 '11. 2.15)
→ 수록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(수정법안 제24조 제2항)
- 발행번호는 개인정보를 식별 및 유추할 수 없는 체계로 구성 필요(토론회, '10.12.16; 민주당 간담회 '11. 2.15)
→ 발행번호 생성원칙 명시(수정법안 제24조 제3항)

□ 전자적 수록에 따른 보안 강화

- 개인정보의 전자적 수록 목적을 명확히 규정 필요(간담회, '11.2.15)
→ 위변조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목적 명시(수정법안 제24조의2 제1항)
- 전자주민증의 복제 가능성 등에 대한 보안대책 필요(국감 10.22, 간담회 '11. 2.15)
→ 기술적 안정성(국제적 공인 신형칩 사용)과 개인정보에 대한 영향평가(수정법안 제24조의2 제2항) 등 추가 보안대책 수립
- 전자적 수록정보 유출 및 데이터베이스 집적 우려가 있으므로
 - 수록정보의 제공요건, 개인정보 전송금지(국감 10.22, 간담회 '11. 2.15) 및 보안조치 등 기본원칙(인권위 토론회 10.14, 공청회 10.25)을 법률에 규정 필요
 - 전자적 수록 정보의 열람방법, 저장□수집 금지 및 보안조치 등을 법률로 규정(수정법안 제24조의2 제3항 ~ 제5항)
- 리더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 대규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에 처벌 조항 등 명시 필요(공청회, 10.25)
→ 법률로 벌칙조항 신설(수정 법안 제37조 제11호)

【개정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】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① (생략)	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	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주민등록증에는 <u>성명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지문(指紋), 발행일,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. 다만,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.</u>	② 주민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. 이 경우 제10호의 유효기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1. <u>성명</u> 2. <u>성별</u> 3. <u>생년월일</u> 4. <u>주소</u> 5. <u>사진</u> 6. <u>주민등록번호</u> 7. <u>지문(指紋)</u> 8. <u>발행일</u> 9. <u>발행번호</u> 10. <u>유효기간</u> . 다만,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11. <u>주민등록기관</u> 12. <u>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</u>	② <u>주민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. 이 경우 제10호의 유효기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1. ~ 11. (개정안과 같음) 12. <u>혈액형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.</u>
		③ <u>제2항제9호의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유추할 수 없는 형태로 부여하여야 한다.</u>
<신설>	③ <u>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외이주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외이주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.</u>	④ (개정안 제3항과 같음)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<신설></u>	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적 수록의 방법,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 또는 열람 방법, 보안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<삭제></u>
제24조의2 <u><신설></u>		제24조의2(주민등록증 정보의 전자적 수록 등) ①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주민등록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
		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주민등록증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.
		③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 중 전자적으로만 수록된 정보를 판독기(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는 전산장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통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		④ 주민등록증에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는 판독기를 통하여 수집·저장할 수 없다.
		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전자적 수록의 방법, 열람방법, 보안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3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2. (생략)</p> <p>3.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</p> <p>6. ~ 10. (생략)</p>	<p>제37조(벌칙) ----- ----- -----2천만원----- -----.</p> 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 제2항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</p> <p>6. ~ 10. (생략)</p>	<p>제37조(벌칙) ----- ----- -----2천만원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1.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한 자</p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4조(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특례) ①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발급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,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국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다.

③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.

참고 2

주민등록증 위·변조 사례

유형 1

금융거래(인터넷뱅킹) 등 경제·사회활동 기반 붕괴

- ① 인터넷뱅킹 인출, 위조 신분증인지 몰랐다(11.4.13 / KBS NEWS)
 - (위변조 방법) 인터넷뱅킹을 쓰지 않는 고령자의 은행 고객계좌, 비밀번호 등 고객정보와, 피해자의 인적사항(이름, 주민번호)을 기입한 위조 신분증을 중국 전문 브로커를 통해 구입
 - (위조 증 이용) 위조 주민증으로 새 은행계좌를 개설,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총 4억2천만원 인출
- ② 위조증으로 통장 개설, 대부업체 불법대출(11.1.20/서울 수서경찰서)
 - (위변조 방법) 산부인과 의사 J씨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파악하여, 중국 전문 브로커에게서 위조 주민증을 구입
 - (위조 증 이용) 산부인과 의사 J씨로 행세하며 통장 및 휴대폰을 개설하고, 대부업체 7개사로부터 6천6백만원을 불법 대출

유형 2

국가 공공시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

- 감쪽같은 '위조 주민증' 공항 통과(11.4.16 / SBS 8시뉴스)
 - (위변조 방법) SBS 기자(김요한)가 인터넷을 통하여 중국 위조업자에게 주민증(60~80만원 거래)을 위조 의뢰하자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기재한 가짜 위조증이 국제택배로 하루만에 배달
 - (위조 증 이용) 항공권 발권 및 공항 검색대 무사통과, 국회와 정부청사 무사출입,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즉시 개통 등 신분확인 절차가 있었지만 증 위조 사실 미발견

유형 3**전세사기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 저해****① 집 없는 서민 울리는 신종 전세사기 (11.3.8 / MBC PD수첩)**

- (위변조 방법) 월세로 집을 임대한 후, 집 주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국 위조업자에게 위조 주민증 구입
- (위조 증 이용) 월세로 임대한 집의 주인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세입자들을 상대로, 위조 주민증으로 집 주인이라 속여 전세보증금 40억원 사기 (피해 가구 : 132가구)

② 월세 빌려 전세 놓고 보증금 29억원 꿀꺽 (10.12.3 / 동아일보)

- (위변조 방법) 소형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하고 계약 당시 받은 집 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중국브로커로부터 위조증 구입
- (위조 증 이용) 66㎡ 안팎의 소형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후 가짜 부동산중개업자와 짜고 위조증으로 주인 행세를 하며 다시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 29억8천만원 사기

유형 4**잠재적 청소년 범죄환경 유발 및 불법 취업****① 청소년 술, 담배 구입을 위한 주민증 변조 (10.8월 / 충남)**

- (위변조 방법) 주민증의 두 번째 번호인 "2"자를 커터 칼로 긁어 떼어내고 "0"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변조 (생년 82년→80년)
- (위조 증 이용) 변조 주민증으로 편의점에서 술, 담배 구입

② 청소년들 취업 목적으로 주민증 위조 (09.2월 / 대구)

- (위변조 방법)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중국 위조업자에게서 자신의 사진을 붙인 타인명의 위조 주민증 구입
- (위조 증 이용) 위조 주민증으로 유흥업소 도우미로 불법 취업

종전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추진과 비교

□ 1990년대 전자주민카드 계획

- 한 장의 카드에 7개 분야 47개 정보를 수록한 통합카드로 계획
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초본, 운전면허증, 의료보험증, 국민연금증서, 인감)
- 통합카드를 각종 민원 신청 □ 신고업무의 자동화에 직접 활용
⇒ 정부의 정보독점 및 국민 사생활침해 논란으로 보류('99)

□ 2006년도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시 제시된 발전모델

- IC칩에 주민등록증 정보만을 수록
- 운전면허 등 자격연계 및 각종 부가 서비스 방안을 포함
- 정보를 직접 수록하지 않고 연계 Key값만 탑재하는 방식 제시

□ 현재(2010년)의 전자주민등록증 계획

- 주민등록증 기능에 충실하도록 신원확인에 필요한 항목만을 수록
 - *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사진, 유효기간, 국외이주국민 표시, 발행번호, 발행일, 주민등록기관, 주소, 지문(12개 항목)
- 위 □ 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근원적 보호에 중점 설계

【2006년 연구용역* 결과와 현재 추진내용 비교】

구분	과거 연구('06,'07)	현행(안)	변경 사유
수 록 정 보	온라인 신분확인 기능 포함 ※ (칩 수록정보) 성명, 사진, 성별, 생년월일, 발급번호, 발급일자, 발급기관장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지문, 주민등록증용 인증서	온라인 신분확인 기능 배제 ※ (칩 수록정보) 성명, 사진, 생년월일, 발행번호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지문	·위변조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에 집중
연 계 서 비 스	교통카드, 건강보험, 운전면허, 출입국 등 다양한 연계 (선택) 온라인 인증서 탑재(선택) ※ 온라인 신분확인에 이용	연계서비스 없음 인증서 탑재 안함	우회적인 정보 통합 및 집적 우려 해소
진 위 확 인	① 위변조 진위확인 : IC칩 정보 열람 ② 분실증(유효성) 확인 : 온라인 확인	① 위변조 진위확인 : IC칩 정보 열람(좌동) ② 분실증(유효성) 확인 : 기존방식 유지 ※ ARS(전화), 민원24	사용행적 기록 등의 우려 원천 차단
비 용	8년간 5,766억원 소요 * 증 제작단가 :11,200원	10년간 4,862억원 * 증 제작단가 : 6,700원	증 단가 인하 및 연계기능 제외

(* 2006년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용역 / 2007년 기능시험 기술적 타당성 검증 연구용역)

전자주민등록증 활용(예시)

□ 일상적인 신분확인

- 주민등록증의 표면에 표시된 정보로 충분히 가능하므로, IC칩 정보를 읽을 필요가 없음

□ 정확한 신분확인

- 부동산□금융□공공 민원 등의 경우 리더기를 통해 IC칩 내용을 읽어서 위□변조 및 개인정보 열람

※ 공공기관, 금융, 병원, 통신□부동산 등 총 20만 곳에서 수요발생 추정

<유형별 활용 예시>

○ 일상생활에서 신분확인

- (편의점, 마트, 서점 등) 술, 담배, 잡지 등 성인물품 판매 연령 확인
 - (선박, 항공사, 여행사 등) 선박료, 항공료, 관광료 할인 등 지역민 우대
 - (극장, 공연장 등) 연령확인이 필요한 영화, 연극 공연 출입 등
 - (카드사, 보험사, 은행 등) 신용카드 신청, 보험상품가입 등
- ⇒ 주민등록증 표면정보 확인으로 충분 (플라스틱 증과 동일)

○ 금융대출, 부동산거래 등 주요 거래

- 대출□담보, 부동산거래□공증, 휴대폰 개설 및 병원 진료카드 작성 등
 - 여권발급, 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자격증 발급
 - 출입국 관리, 선거인명부□납세자 확인, 실업급여지급 등 행정업무 수행
 - 주민등록등초본, 인감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처리
- ⇒ 현장에서 리더기를 통해 IC칩 내용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열람